

II. EU Solvency의 현황 및 문제점

1. Solvency- I 의 적용

- 현재 EU 회원국에 적용중인 지급여력제도는 1973년 “EU 손해보험 1차지침”과 1979년 “EU 생명보험 1차지침”에 도입된 제도로 아래와 같음

■ 생명보험 지급여력기준금액 = 책임준비금 기준금액 + 위험보험금 기준금액

⇒ 책임준비금 기준금액 = 책임준비금 × 4% × 재보험계수(85% 이상)

⇒ 위험보험금 기준금액 = 위험보험금 × 0.3% × 재보험계수(50% 이상)

■ 손해보험 지급여력기준금액 = Max(보험료 기준금액, 손해액 기준금액)

⇒ 보험료 기준금액 = 보험료 × 리스크계수 × 재보험계수(50% 이상)

리스크계수는 1000만 유로까지는 18%, 초과분은 16%

⇒ 손해액 기준금액 = 손해액 × 리스크계수 × 재보험계수(50% 이상)

리스크계수는 700만 유로까지는 26%, 초과분은 23%

- 1992년 제3차 보험지침 제정시 지급여력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, EU 집행위원회는 2000년 10월 지급여력제도 수정지침(Solvency- I)을 제출하였고, EU회원국은 2004년부터 동 지침을 적용중에 있음
- 지급여력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개별 회원국 감독당국의 조기개입 권한 확대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을 강화하

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

■ 회원국의 감독권한 강화

- ⇒ 특정지역 리스크 고려 : 회원국은 보다 강화된 지급여력 규칙 적용 가능
- ⇒ 계약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에 조기개입권 부여

■ 지급여력기준금액 강화

- ⇒ 최소보증기금 : 300만 유로(손해보험은 종목에 따라 200만 또는 300만 유로)로 상향조정, European Index of Consumer Price에 연동
- ⇒ 보험료 기준에서 높은 계수(18%) 적용 보험료 한도(1000만→5000만유로), 손해액 기준에서 높은 계수(26%) 적용 손해액 한도(700만→3500만유로)를 5배 상향조정
- ⇒ 특정 손해보험종목(해상, 항공, 일반배상책임)의 지급여력기준금액 50% 인상

2. 현행 방식(Solvency- I)의 문제점

□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함

- 현행의 고정비율(Fixed Ratio : <별첨 1> 참조)방식은 보험회사의 자산/부채 보유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급여력기준 산출금액의 정당성이 떨어짐
- 고위험 자산/부채 보유회사와 저위험 자산/부채 보유회사간의 지급여력비율상 변별력이 떨어짐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음

□ 부채평가방식의 상이함에 따른 보험사별 비교가능성 저해

-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1차적으로 “보험계약준비금

(보험부채)“의 적립으로 준비하며, 이를 초과하는 지급의무는 지급여력을 통하여 보장하므로

- 부채평가방식 및 규모가 국가별/회사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급여력만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²⁾

□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미흡

-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
-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위험계수에 의한 현행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함

□ 정성평가(Qualitative Assessment)에 관한 제도장치 미비

- 보험회사의 파산은 재무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지급여력 비율의 악화 이전에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및 내부통제 문제로 야기되어짐
- 따라서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파산을 방지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를 통한 조기개입권한의 확보가 필요함

2) 예를들면, 동일한 위험을 인수한 두 보험회사중 A사는 부채를 100으로 평가하고, B사는 200으로 평가한 경우, 이러한 부채평가금액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함. 즉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부채와 지급여력금액을 동시에 평가하여야 함